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867
----------	-------

발의연월일 : 2025. 6. 16

발 의 자 : 이재강 · 김우영 · 김준형
이기현 · 박지혜 · 박민규
박해철 · 이훈기 · 허성무
김성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함.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됨.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함.

그런데 기간 내에 선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음. 복수국적자의 주된 생활근거지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또는 거주 경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사회통념상 현행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20.9.24. 선고 2016헌마889),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정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허용하여 개인의 권리와 공익의 조화를 기하고,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신고절차 등을 공고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임(안 제12조 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의2).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때부터 3개월 이내에”를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그”를 “공고 절차와 세부내용 및 그”로 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신고기간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중 “때부터 3개월 이내에”를 각각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 무) ① (생 략)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 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u>3개월 이내</u> 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 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 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 에도 할 수 있다.	② ----- ----- ----- <u>해의 12월 31일까지</u>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① ~ ③ (생 략)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④ 법무부장관은 제12조에 따 른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신고기간 및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 항과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 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受理)요건,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국적자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② ~ ⑤ (생략)

다.

⑤ ----- 제4항까지의 -----

----- 공고 절차와
세부내용 및 그 -----
----- .

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에 관한 특례) ① -----

해의 12월
31일까지-----

-----.

1. (현행과 같음)

2. -----

----- 해의 12월 31일까
지-----

② ~ ⑤ (현행과 같음)